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전재수·전용기·고영인

송옥주 · 최인호 · 고용진

허 영·박재호·이병후

이장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 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 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u>1억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6천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	
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